

| | |
|-------|-------------|
| 의안번호 | 제 51 호 |
| 의결연월일 | 1995. 12. . |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 12. 12. 예산군수

나. 회부일자 : 1995. 12. 12.

다. 상정일자 : 1995. 12. 22.

제44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재무과장 : 임원순)

가. 개정이유

- 지방세법중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세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96. 1. 1부터 시행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세 소득할 세율 상향 조정 (안 제15조제2항).
 - 현행 7.5% → 10%
- 부칙에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등 삽입.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임치빈)

가. 개정 배경

-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 11. 17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소득할은 '76년부터 세율 결정후 1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인상된 바 없으므로 예산군세조례 제15조제2항의 주민세의 소득할 세율을 현행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조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등을 삽입 운영코자 이산군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현행 지방세법 체계상 부동산과세 세목의 세부담 증가는 곤란하므로 소득과세인 주민세(소득할)에서 세수증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및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